[별첨8]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용(일반상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0. 7. 7. 기준 >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일반상환)

■ 대출한도 : 전환 대상 계좌 합산 대출 잔액 전액

■ 대출기간 : 최대 10년(최대상환 10년)
-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❶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 차주연령은 전환대출 연도-출생연도-1이며 월, 일 계산 제외
  - ‣ 차주연령 60세 초과자인 경우 기존 대출의 잔존 상환 기간을 최대 상환기간으로 설정 가능(상환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
  - ❷ 거치기간은 없으며,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 고정금리 : 교육부장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리
- ‣ **전환대출: 2.9%(고정금리)**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 ❶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❷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❸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❹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2.9%(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전환대출 실행 시 대상 계좌의 잔액을 재단이 은행 및 재단으로 송금하여 상환처리를 대행하며, 전환 대출을 완료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은행에서 완제(해지) 처리

7.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 납부 : 평일 09시 ~ 19시
  -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8. 대출자격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환대출 가능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9.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10. 대출조건 변경

■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 계좌별 2회

‣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각 1회 추가 연장 가능

■ 납부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11. 특별상환 상환유예

■ 대상기준 :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 유의사항

■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 **연체 시 불이익**

❶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❷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 발생 될 수 있음**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상실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상환・조건변경 문의, 연체해소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 센터 ☎ 1599-223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센터 ☎ 1599-2250)